

## 표창 대상자 추천 관련 유의사항 등

### ■ 표창 추천 금지 규정 강화

- 피 추천인용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작성
- 범죄경력 있는 자에 대한 추천 금지(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일부개정, `17.05.18. 시행)

####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(표창금지)

1. 음주운전, 금품, 향응수수, 공금 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
2.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
3.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

- 범죄경력 있는 자에 대한 기존의 지침상 제한이 조례로 명문화됨으로써 표창 수여 대상에 보다 엄격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됨
  - ▶ 피추천인 :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사인
  - ※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홈페이지 표창기록 등재 동의서를 변경하여 공적 및 결격사유에 대한 본인확인과 사후 책임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여 확인서를 작성

#### 범죄 사실 확인 방법

- ◆ 경찰청을 통한 범죄사실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에 대해서만 확인 가능 (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)
- ◆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,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

- 고액·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추천 금지
  - 「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국세·관세 체납자」 및 「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」 제외
    - ※ 201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(행정자치부)

## ■ 공적조서의 작성

- 단순한 사업 참여,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
  - ex) 지역사회발전 기여(X) → 0년간 0회의 사회 봉사활동 실시(0)

## ■ 추천 제한 기준

- 수공기간 :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
-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
  - 이중표창 :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
  - 재 표창 :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
-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
  -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
  - 3년 미만 지역·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- 3년 미만 징역·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·금고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-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
-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
  -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, 현지실사,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

○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

관 련 법	내 용
산업안전 보 건 법	<p>▶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</p> <p>☞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moel.go.kr">http://www.moel.go.kr</a>) : 알림마당 → 알려드립니다 → 공고 → 검색창 ‘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’입력</p>
공정거래 관 련 법	<p>▶ 「공정거래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</p> <p>-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-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</p> <p>☞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ftc.go.kr">http://www.ftc.go.kr</a>) : 심결법령 → 법위반사실조회 → 회사명 입력</p>
근로기준법	<p>▶ 최근 3년간,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(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</p> <p>☞ 고용노동부(<a href="http://www.moel.go.kr">http://www.moel.go.kr</a>) :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조회</p>

관 련 법	내 용
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 기본법	<p>▶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</p> <p>- 국세·관세 :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‘3억원’ 이상의 체납자 - 지방세 :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‘1천만원’ 이상의 체납자</p> <p>☞ 국세(<a href="http://www.nts.go.kr">http://www.nts.go.kr</a>) : 국세청 → 정보공개 →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</p> <p>☞ 관세(<a href="http://www.customs.go.kr">http://www.customs.go.kr</a>) : 뉴스/소식 → 공고/공시 → 관세청공고 → 검색창 ‘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’ 입력</p> <p>☞ 서울시지방세(<a href="http://finance.seoul.go.kr/archives/33176">http://finance.seoul.go.kr/archives/33176</a>)</p>